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17
------	------

2025. 9.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8일, 박강산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9. 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강산 의원)

1.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적에 추가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 범위에 대학을 포함하여, 서울형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 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함(안 제1조)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함(안 제6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조례 목적에 추가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국제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됨.
- 특히, 한국문화는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를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류의 흐름이 ‘보는 문화’에서 한식, 관광 등 ‘경험하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국제교류 또한 문화 수출과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적으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동 개정안이 제안한 조례 목적에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의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의 국제교류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확장하고, 서울시 문화예술의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문화교류 목적 강화 및 참여 주체 확대안(안 제1조 및 안 제6조제2호)

-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직접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가, 단체 등 민간이 자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획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난 4년간의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해외도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사업의 증가로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규모도 함께 증가하였음.

< 2022~2025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차)
소요예산 (천원)	790,000	1,081,750	3,900,000	4,938,000
신청 건수	22개	57개	84개	84개
선정 건수	10개	16개	41개	47개
문화교류국가 (오프라인)	5개 단체 5개국	9개 단체 8개국	23개 단체 20개국	30개 단체 34개국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모사업 규모 및 지원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성평가 항목에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정에 발맞춘 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

하는 등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 따라서, 동 개정안이 제시한 국제문화 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 대상에 ‘민간’의 범위를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보유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1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박강산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강석주, 김기덕,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박수빈,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윤영희, 이민옥,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3명)

1.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적에 추가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포함하여, 서울형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함(안 제1조)
-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함(안 제6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민간”을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u>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u>----- ----- --.</p>
<p>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자치구와 <u>민간</u>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 5. (생략) 	<p>제6조(사업)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민간단체·법인, 대학 등</u>----- 3.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6조(사업)제2호의 민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¹⁾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문화본부 2025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 5,111,100천원천원(민간국제 문화교류 사업 포함)
○ 서울시 관련부서 각종자료 확인결과 기존에도 해당 사업에 대학(민간에 포함)이 참여할 수 있어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
※ 참고로 입법취지 문의결과 해당 개정안은 대학의 사업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입법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사업 추진 등은 추계 고려사항에서 제외함